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4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이종욱·최은석·박정하

이양수 · 김예지 · 김종양

박수영 · 김소희 · 이성권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,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,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.

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, 한국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, 한국전기통신공사,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 &G,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,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 국담배인삼공사, 한국전기통신공사,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(안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4호,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).

법률 제 호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혅 개 정 第2條(適用對象企業) 이 法은 다 第 2 條 (適 用 對 象 企 業)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(이하 "對象企業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1. 韓國담배人蔘公社法廢止法律 <삭 제> 에 의하여 商法에 의한 株式 會社로 轉換된 韓國담배人蔘 公社 <삭 제> 2. 韓國電氣通信公社法廢止法律 에 의하여 商法에 의한 株式 會社로 轉換된 韓國電氣通信 公社 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4. 韓國重工業株式會社 <삭 제> 5. • 6. (생략) 5. · 6. (현행과 같음) 第21條(適用排除) ① (현행과 같 第21條(適用排除) ① (생 략) 유) ② 韓國重工業株式會社의 株式 <삭 제> 중 政府등이 보유하는 株式의 賣却入札을 통하여 株式을 취득 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同一人과 다음 各號 의 者가 所有하는 議決權있는

株式의 比率이 議決權있는 發行 株式總數의 100分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召集되 는 株主總會日 이후에는 이 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契約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目的으로 하는 者
- 2.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者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있는 者

③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